

평화로운 한반도!
즐겁게 일하는 여성!
여성정치세력화!
이.제.부.터.시.작.입.니.다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여성 10대정책 38대공약

- 일시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중앙당 기자회견실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 (1) 200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해소.
-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질화(여성노동자 채용, 승진, 임금에서의 차별철폐).
- (3)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유급 유산휴가,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근절.
- (4)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전 사업장 확대, 간접차별 개념확대 및 처벌요건 강화.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 (1) 쌀개방 저지, 밭주곡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여성농민의 생존권 보장.
- (2) 여성농민을 공동농업경영주로 명시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고 전 부문에서 농업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 (3) 안정적인 여성농민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행정체제로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여성국으로 승격, 각급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3> 여성 일자리 창출

- (1)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특히 여성청년 고용시 사용자에 20~30% 고용보험료 할인 혜택.
- (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목표치를 상향조정, 공기업 30% 여성채용 목

표제 시행.

- (3) 공기업 및 공공영역에 저소득 여성 우선 채용(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의 여성, 장애인여성 등)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중단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50%이상 확대, 우선 농어촌지역 영아전담보육, 방과 후 전담교육을 국공립시설로 확충.
- (2) 영아보육비와 유아교육비에 대해서는 재산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는 소득별 차등제를 실시.
- (3)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또는 보수, 교육 시 대체인력 확충, 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를 개선.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 (1)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30% 여성할당 실시.
- (2) 정당법에 여성할당 조항 의무적 명기, 이를 시행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을 실시.
- (3)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1로 조정.

<6>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양성평등관점 실현위한 시스템 구축

- (1) 정부 및 지자체 모든 관계자에게 년 4회 정기적인 양성평등 교육, 정책평가 점검 실시.
- (2) 장관관 및 고위직 공무원 임명시 여성을 30% 이상 임명하고, 5급이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내의 여성공무원 30% 이상

승진 목표제를 도입.

(3)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

<7>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실현

(1) 호주제 폐지(현재 제출된 민법개정안의 ‘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포함),
1인 1적제 실시.

(2) 부부공동재산 제도 마련.

(3) 가족정책 전담 부서를 강화하여 양성평등 가족 정책 이행을 집행, 평가,
점검.

<8>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성정책 준비 위한 기구 구성.

(1)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남북여성 교류(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 및 지원
활동과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국제반전평화여성네트워크 추진.

(2) 평화통일 여성정책전담기구 설치

(3) UN 등 국제기구, 반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에서의 전문여성인력 진출
지원.

<9>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

(1) 생애주기별로 여성건강통계를 구축하여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한다.

(2) 여성건강전문연구센터 설립하여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 지원 서
비스 강화.

(3) 여성 농어민 평생건강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순회서비스와 정기건강검진
서비스 확대와 산후조리센터 설립, 운영

<10>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 (1) **비혼모**가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명시, 생부가 일방적으로 친권(자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비혼모 출산 시 설을 지원.
- (2)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 (3) **저소득 빈곤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범위확대(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육아 급여의 마련) 및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확대(무상 보육, 교육 우선 대상,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확충)
- (4)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모성건강 침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법 적용/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법 개정
- (5) **이주 여성(노동자)**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인신매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출국명령 유보 및 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 (6) **여성노인**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평균임금의 15%인 28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 노인도우미 제도 도입)
- (7)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일자리 보장, 성폭력 가중처벌, 모성권 보장) 및 장애여성도우미제도+
- (8) **여성 장애인** 장애인교육법 제정(장애인교육평등 실현, 전생애 여성장애인교육 지원)
- (9) **성매매** 방지법의 실질적 효력을 위한 방안 마련(정부 내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 설립과 성매매알선자, 강요자에 대한 처벌강화(검찰, 법원 구형, 양형실무에 반영),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10)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및 처벌조항을 마련, 성적소수자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찾아주기 동성애자의 결혼권 인정, 이와는 별도로 입양권을 포함한 동거제도 도입(이 동거제도에는 동성커플 뿐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될 수 있음)

● 여성후보 참고자료

<1> 여성노동차별철폐

- (1) 최저임금 - 중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들이 정하고 있는, 저임금 기준인 전체노동자 중 위임금의 3분의 2수준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 우선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03년 9월1일~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 시급 2천510원, 일급 2만 80원 월 환산액 56만 7천 260원 - 작년 7월에 공지)
- (2) 비정규직 80% 여성, 채용,임금, 승진 차별받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 (3) 현재 출산율 1.17%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수당 주고 셋째아이부터 보육비 준다고 하나 해결책 아님. 직장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썼다오면 자리 빼앗기고 해고 당하는 현실에서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해고 근절이 급선무다.
- (4)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을 통해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여성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사내부부 우선 해고, 성별 직종분리 심화되고 있고, 어렵게 취업해도 승진, 보직, 배치, 교육 등에서의 성차별적인 여성배제 심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실에서 미약하게 처리, 남녀고용평등법상 폭언 및 폭행관련 조항은 아예 없음.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 (1) 2003년 현재 농가인구 3,530,102명 중 여성이 1,814,975명으로 51%이며,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은 52.5%로 여성농민이 없이는 농업을 유지.발전 시켜 나가기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농업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조 노동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어 자신의 노동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 (2) 98년 농림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농업.농촌기본법에 기초한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여성농업인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농림부 내에서의 위상이 낮고 하부단위가 없는 고립된 체계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시행중인 여성농업인5개년 계획조차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담당관실의 위상을 높여 여성농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정부 부처간, 농림부내 국.실간 조정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가 없이 담당자들이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으면서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집행에 대한 책

(3)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업생산자 개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1평당 일정액을 직접 지불해 주는 것을 받주곡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3> 여성 일자리 창출

- (1) 청년의무고용제도입- 남녀평등 실천 기업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여성청년 고용시에 20-30% 사용주에 고용보험료를 할인해 줌.
 300인 이상 기업(산업업종별 차등화 적용 추가 고려) 3% 100이상 300인 이하 기업 1% 청년 실업 의무고용제 도입, 의무고용 목표 충족 시 고용보험료 인하
 의무고용 목표 미달성 시 1일당 고용보험료 할증률 적용
- (2)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2010년까지 20% 목표)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율 상향 적용(2010년까지 20% 목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 전국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 비율은 18.6% 사립민간비율은 81.4%, 특히 영아시 설은 거의 없다시피 함. 0-5세 무상교육지원받는 아이들 4.7%,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 아이들 비율은 25%, 보육비가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 물론 2004년 1월 8일 7년만에 영유아교육법 제정되면서 단계적이지만 만 5세 무상교육이 법제화되었지만, 영아에 대한 높은 비용 문제로 부족한 국공립시설, 그리고 방과 후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영유아보육정책은 진일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50% 이상 대폭 늘릴 수 있는 시행방안, 더불어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 나아가 영아부터 방과 후 교육까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과 체계를 세워야 한다. 더불어 현행 직장보육설치 사업장 기준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비현실적 기준을 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설치하지않을 경우 별칭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2) 차등보육료제란? - 스웨덴의 경우 부모의 소득(상중하) 취원 자녀수, 취원 시간에 따라 부모들은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차등보육료제 실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 연방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아동보육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는 가족의 소득 및 재산평가를 실시해 자산결과와 보육자녀 수에 따라 개별적인 보육료 보조비율이 정해진다.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 (1) 선거가 정책을 중심으로 치러지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기 위한 선거법의 개혁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 역차별 조치
- 우리나라 여성의 삶의 질 수준(GDI)은 세계 상위권(여성개발지수 146개국중 29위)에 속하지만, 여성의 정치행정 등 사회적 진출 정도(GEM)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개도국 평균에도 미달하고 있다.(여성권한척도 64개국 중 61위)

국 가	GEM 순위	의회여성 점유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실질여성 GDP
한 국	61	5.9	5	34	10,791
노르웨이	1	36.4	25	49	23,454
아이슬란드	2	34.9	27	35	22,361
스웨덴	3	42.7	29	49	19,690
덴마크	4	38.0	23	50	22,835
핀란드	5	36.5	27	56	20,657
네덜란드	6	32.9	27	46	17,635
캐나다	7	23.6	35	53	26,259
독일	8	31.0	27	50	16,904
뉴질랜드	9	30.8	38	54	16,203
호주	10	26.5	26	48	20,977
미국	11	13.8	45	54	26,259
오스트리아	12	25.1	28	49	17,914
필리핀	38	17.2	35	66	2,933
멕시코	35	15.9	24	41	4,978
터키	63	4.2	9	36	4,379
중국	-	21.8	-	-	3,132

* 주 : 66개국을 대상으로 함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 2002년 272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행 15%(273명중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수로는 소수의 대표권과 직능 대표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어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역의원은 9.23%(선출직 2.2%, 비례가 67%), 기초의원은 2.2%로, 지방의원 여성비율은 3.35%라는 극소수에 머물러있다. 유권자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 16대 국회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은 2.2%에 불과하고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한 여성이 3~4%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선을 거쳐 지역구에 진출하는

여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시행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 성	여성비율	계	여 성	여성비율
국회의원	15대	1996	지역구	1,389	20	14	253	2	0.8
			전국구	161	21	0.9	46	7	15.2
	16대	2000	지역구	1,038	33	3.2	227	5	2.2
			전국구	140	36	25.7	46	11	23.9
지방의회		1995	광역의회	2,644	119	4.5	972	56	5.8
			기초의회	11,970	206	1.7	4,541	71	1.6
		1998	광역의회	1,480	91	6.1	690	41	5.9
			기초의회	7,450	140	1.9	3,490	56	1.6
		2002	지역의회	1,531	48	3.1	609	14	2.3
			기초의회	7,450	140	1.9	3,485	77	2.2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시·도의회의원선거총람」, 「시·군·구의회의원선거총람」 김태홍·김은경,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1998)

- 2002년 현재 하위공무원 수준에서 여성의 비율은 비교적 상당한 반면에 (25.4%, 6-9급) 기구의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의 수는 극히 적어진다. (5급이상 4.8%)
- 2001년 6월말 현재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25.8%에 불과하여, 행정집행에서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다.

- 현재 여성부 계획 중에서

*** 장·차관급,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여성 임명 확대**

- 정부 주요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2007년까지 40% 목표)
-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승진목표제 실시 검토

***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2010년까지 20% 목표)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율 상향 적용(2010년까지 20% 목표)

*** 66개 국공립 연구기관 및 8개 정부투자기관 연구소로 대상 확대**

- 공기업 채용목표제의 탄력적 실시

***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등 권장 방안 마련**

- 2004년부터 대학 인사위원회 여성교수 참여비율 확대:국·공립대 인사위원회 참여 여성교수 비율 20%로 의무화

<6>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양성평등 관점 실현 위한 시스템 구축

- (1)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역차별 조치.

- 2002년 현재 하위공무원 수준에서 여성의 비율은 비교적 상당한 반면에 (25.4%, 6-9 급) 기구의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의 수는 극히 적어진다. (5급이상 4.8%)
- 2001년 6월말 현재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25.8%에 불과하여, 행정 집행에서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다.

<7>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실현

(1) 부부와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하는 가족의 개념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변화하는 가족현실과 그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가족법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2) <호주제 폐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고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며 가족 형태별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2003.9.4. 법무부는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하민법 개정안) 또한 호주제에 관한 규정들 중 민법 제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 제1항 본문 “자는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夫의 가에 입적한다“이 200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위헌심판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호주제의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계의 반발과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흐름 또한 만만치 않지만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의 호주제 폐지가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02년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폐지찬성 52.9% 반대 35.4% 무응답 12.7%)

- 지난 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입법화 추진되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호주제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일제시대 잔재이다. 여성 경제활동이 49.7%에 이르러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중심의 호주제는 여성을 억압하는 악법, 현행 호주제는 여성취업자 중 24.3%(222만명)가 여성가구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조건에서 시급히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호주제 폐지 입법 투쟁과 개인별신분등록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3) <부부공동재산제도> 가족 내의 평등한 관계 보장을 위한 여성의 재산권 인정

-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활용이 거의 없다. 실제로 가정의 분쟁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재산문제임에도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인 계약의 영역이 아닌 정적인 영역으로 파악하는 정서가 강하다. 부부의 공동재산관리에 있어 일방의 일방적 처분에 의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족의 수입에 있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가족재산에 있어 권리보장이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현행 민법상 당연히 명의자로 소유가 되며, 다만,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에 일방이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언제든지 처분하여도 이

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없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은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주거용 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전-특히 공동관리 및 공동처분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아직 까지도 주거용 부동산 취득시 일반인들의 절대 다수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성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예금채권에 있어서도 금융실명제하에서 법해석론상 각자 명의로 된 예금이나 기타 유가증권 일체는 당연히 각자 소유로 간주되며 이를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

- 부부 중 경제적 약자이며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하여 부부간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혼인 중에 취득, 증가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3) 노동, 조세, 교육, 문화, 복지 분야 전반에 걸치는 가족 정책의 특성상 이를 총괄 조정할 기구 또는 전담부서의 강화

<8>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성정책 준비 위한 기구 구성.

- (1) 남과 북 여성들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활성화 필요. 국제 사회에서 한국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제기구에 전문인력 진출 시급하다. 남북여성들이 만나서 친선과 우애만 다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정책들을 미리 준비하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서 평화통일 여성정책전담기구를 행정부내에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다.

<9>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

- (1)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에게 더욱 많은 질병을 앓도록 한다.

여성의 건강은 특히 사회적 재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 구조 속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건강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2) 우리 나라 평균수명을 보면 남성은 70.56세, 여성은 78.12세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하여 더 길다(여성통계연보, 1999). 그러나 건강수명을 비교하여 보면 남성은 50.7세, 여성은 49.9세로 남성보다 오히려 짧다(윤병준, 1995). 여성은 남성보다 8년 정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결국 여성은 생애의 약 1/3을 만성질환 등 어떤 형태이든지 불편감과 고통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 한국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① 영유아기(0~6세) - 출생성비 불균형, 저체중 여아 출생
- ② 청소년기(7~18세) - 10대의 임신, 낮지만 증가하는 여성흡연,
- ③ 가임기(임신, 출산기 - 19~44세) - 미혼 여성을 포함한 가임여성의 인공유산문제, 높은 제왕절개분만율, 낮은 모유수유율,
- ④ 중.장년기(45~64세) - 남성의 2.5배에 이르는 근골격계 유병률, 비만여성 비율 37%, 저조한 건강검진(암검진 18% 등),
- ⑤ 노년기 - 남성의 1.7배에 이르는 여성노인인구, 여성노인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자, 생애 중 13년을 질병과 동거하는 여성의 불건강한 삶, 성차별적 의료 이용.

-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여성의 생식기 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자궁근종, 자궁경부암 등 자궁관련 질환으로 자궁을 제거한 여성이 한 해 7만 명으로 추정되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0년 국가 암 등록 사업 결과'에서도 여성들의 유방암이 지난 84년에 비해 62.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0>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1) 비혼모가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명시, 생부가 일방적으로 친권(자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비혼모 출산 시설을 지원한다.

* 출산에 있어 시설보호와 의료급여의 확대

- 양육을 원하는 비혼모의 집 확충과 활성화
- 민간 비혼모 시설의 현황 파악 및 정부차원의 지원

* 성에 대한 권리 및 호적 상의 차별철폐

- 호주제가 폐지되고 1인1적이 도입되면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부란에 생부가 기재되고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 민법에 혼외자 차별금지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독일기본법(우리나라 헌법에 해당) 제6조제5항에는 혼인중의 자와 혼외자의 동등한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 비혼모가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을 갖는다는 규정의 명시

- 생부가 자를 인지하여(호주제 폐지 전까지) 양육의무를 부담하더라도(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해도) 경제적 약자인 비혼모로부터 친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비혼모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

* 비혼모, 자의 부양청구권의 인정과 부양의무 이행강제 방안 확보

- 아동복지관 등 보호시설의 비혼모, 자의 인지(호주제 폐지 전까지), 부양청구에 대한 대리권 인정
- 양육비 이행강제방안으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제도와 양육의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도입. 독일의 경우 양육비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1개월 내에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해야 하며, 청구와 집행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또 부양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정지, 자동차잠금장치 설치, 형사처벌 등으로 양육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도입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도덕적 비난으로 그치기에는 비혼모나 자의 복리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사회적 위해 성에 비추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다.

- 양육비 산정의 실질화와 양육의무 이행불능의 경우에 국가지원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 보육시설의 확충

* 출산에 있어서의 시설보호와 연동한 자립지원과 양육지원

(2) 전업주부 및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회보험수급권의 확대

*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국민연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피부양자로서의 분할 비율의 실질화(고용안정 통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적용의 실질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가급연금수령을 인정, 가급연금액의 분할비율확대)

-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

- 국민연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피부양자로서의 분할비율의 실질화

- 고용안정을 통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적용의 실질화

-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가급연금수령을 인정, 가급연금액의 분할비율확대

- 노령연금의 요건 완화

* 산업재해에 있어 여성 종사비율이 높은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항목의 세분화

(3) 저소득빈곤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범위확대(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육아 급여의 마련) 및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확대(무상보육, 교육 우선 적용, 아동양육비, 학비, 복지 기금,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확충)

* 한부모가정지원정책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상자의 확대와 기준의 실질화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복지기금(소득보조),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의 확충과 실질화

-모부자보호시설의 확충

-한부모가정 상담센터, 문화센터 마련과 전문인력의 배양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자녀부양금의 지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한 양육비 이행의무의 법적 강제

* 빈곤여성정책

- 자활프로그램
- 생업대출기금의 마련
- 취업알선
- 공공부조의 확대

*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여성통계의 마련

(4)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모성건강 침해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법 적용,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부당한 이혼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법 개정

(5) 이주 여성(노동자)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인신매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출국명령 유보 및 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6)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전 생애 주기를 통한 여성복지의 증진

* 고령화사회에 있어 여성노인의 경제, 문화적 빈곤은 사회전반의 영역에서의 성차별의 누적적인 결과이다. 여성노인들의 한국 사회의 구조, 문화 변동에 따른 그들의 생애사에 대한 이해와 누적되어온 차별을 개선하는 적극적 조치, 국가차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대가 전면적으로 수렴되는 방향을 가지고 여성노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노후소득의 보장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
- 노후연금의 확대, 일정나이 이상 여성노인의 경우 전업주부기간, 가정에서의 간호,보육 등의 돌봄노동도 경제적 기여분을 평가하여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배우자의 소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노령 연금의 수급권을 인정

* 여성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 확충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등의 검사를 필수로 넣어야 함
- 치매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여성노인들에 대한 보호서비스제도의 확충
- 개호에 대한 보험제도 마련

* 가족법제도의 개선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을 전체 상속분의 1/2이상 보장

(7)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일자리 보장, 성폭력 가중처벌, 모성권 보장) 및 장애여성도우미제도

(8) **여성 장애인** 장애인교육법 제정(장애인교육평등 실현, 전생애 여성장애인교육 지원)

(9) 성매매의 방지와 피해여성의 보호

* 성매매 방지법의 실질적 효력을 위한 방안 마련(정부 내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 설립/성매매알선자, 강요자에 대한 처벌강화(검찰, 법원 구형, 양형실무에 반영),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폐지
- 성매매알선자, 강요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불법수입에 대한 몰수, 추징
- 직장 내 성매매문화근절을 위한 교육 실시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부과
- 수사기관이 성매매알선자 등과의 결탁으로 성매매단속에 대한 의무 해태시 형벌부과 (기존의 수뢰죄나 범인도피,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외에 성매매방지법 상의 수뢰죄나 직무유기죄 등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신설하여 형을 가중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국가배상의 근거조항 마련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신변보호 조항 마련

* 성매매방지법의 실질적 효력을 위한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내에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 예산과 인력의 확보
- 실질적 단속을 위한 수사기관의 교육, 수사지침의 마련
- 성매매알선자, 강요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 성판매자, 구매자에 관한 처벌의 완화
성판매자의 쉼터제공, 직업알선, 의료지원 강화를 통한 성매매로의 재유입 경로차단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

(10)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 유해 사이트 지정 철폐 포함) 성적소수자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찾아주기 동성애자의 결혼권 인정, 이와는 별도로 입양권을 포함한 동거제도 도입.(이 동거제도에는 동성커플 뿐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될 수 있음)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및 처벌조항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 유해 사이트 지정 철폐 포함).

